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률로 개정('19. 6. 12.)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 구성·운영 : 재량사항 → 의무사항으로 변경
- 인 원 : 11인 →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변경
- 위원구성 : 구성방법(신설)
- 위 원 장 : 센터장 →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 위원임기 : 임기, 연임, 잔임 규정(신설)

## 나. 위탁계약기간

-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다. 민간위탁 관련 근거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이 없어짐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보육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여성보육과, 전화 : 02-3396-5433, 팩스 : 02-3396-8739, email : lmy\_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직원의 대표
5. 건강가정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당연직)
6.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을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u>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6조(위원회 운영) ① ----- ----- <u>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센터장</u></li> <li>2. <u>센터 이용자 대표</u></li> <li>3. <u>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u></li> <li>4. <u>센터 직원의 대표</u></li> <li>5. <u>건강가정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당연직)</u></li> <li>6. <u>후원자 또는 지역주민</u></li> <li>7. <u>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li> <li>8. <u>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li> </ol>

현행	개정안
<p>③ <u>위원은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 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u></p> <p>&lt;신설&gt;</p> <p>④·⑤ (생략)</p> <p>제9조(위탁운영) ① (생략)</p> <p>② <u>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략)</p> <p>④ <u>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에 의한다.</u></p>	<p>③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④ <u>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5년</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p>